## 당당한 노후생활 설계

# 절약보다 전략이 중요하다.

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

# 당신의 계획, 당신을 위한 세상의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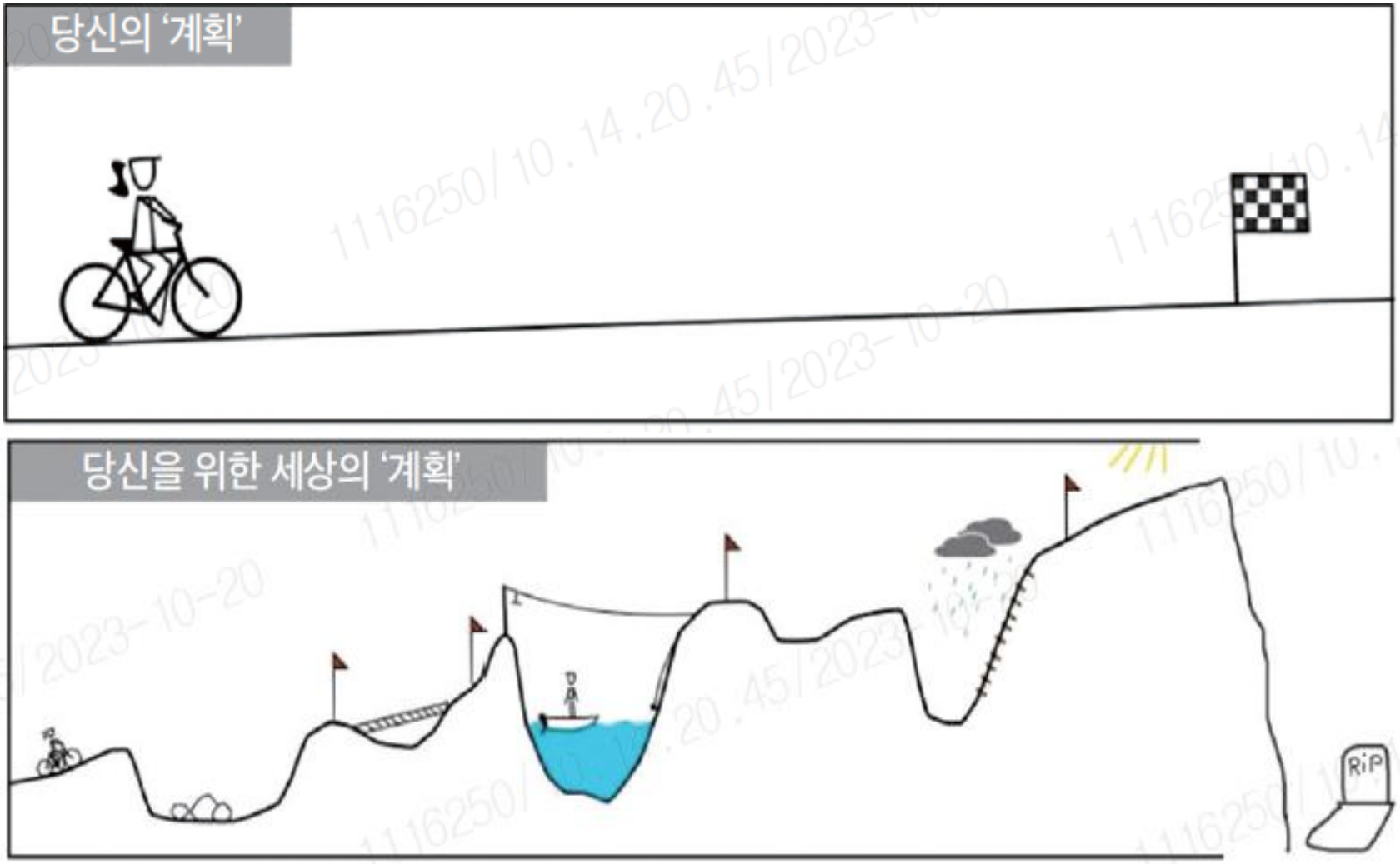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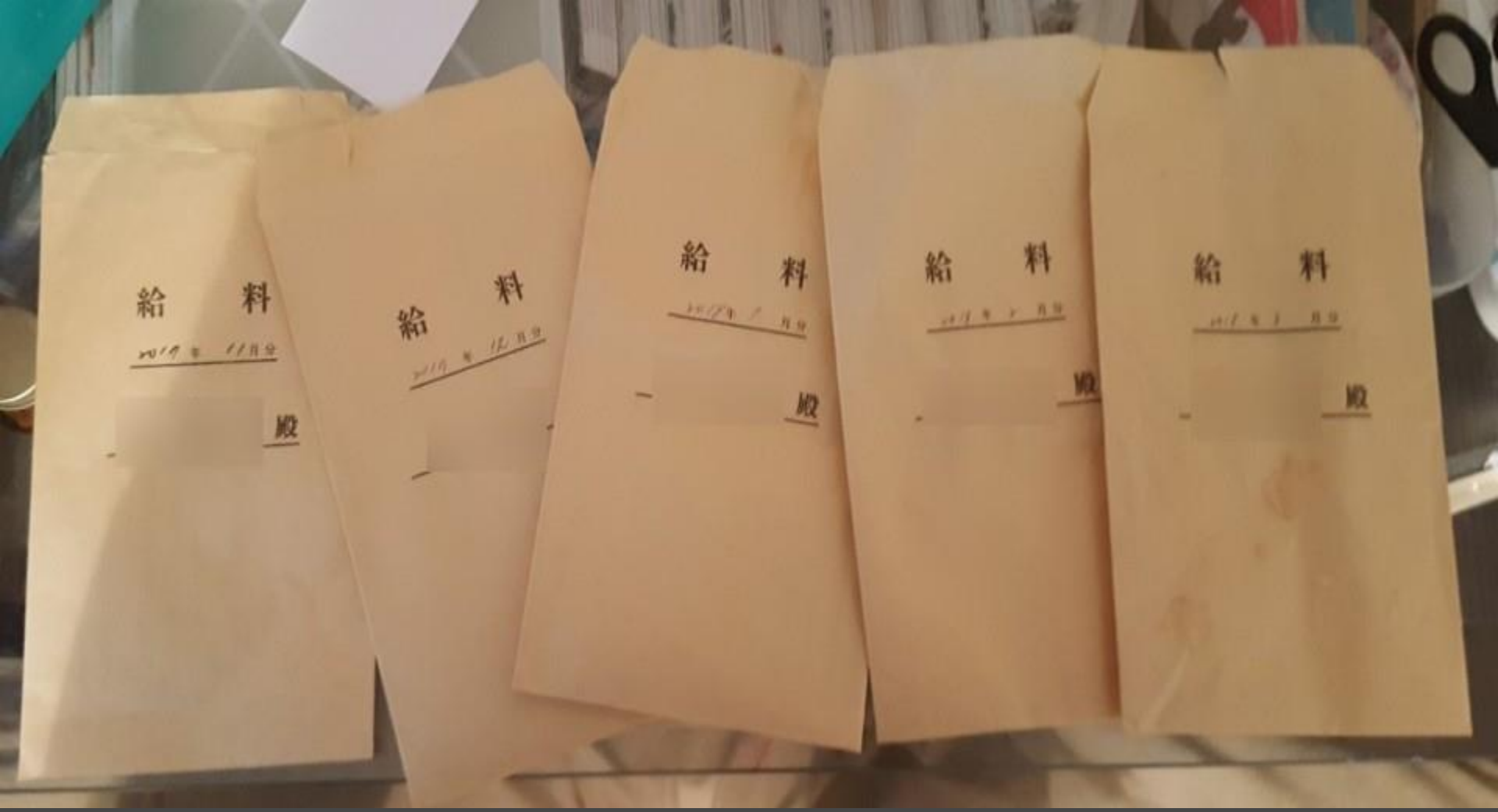


# 평생 월급 만들기

잔 루이스 칼망
(1875.2.21. ~ 1997.8.4.)
22세

122세

# 1965년 잔 칼망은 아파트를 매도한다.

매도인 : 잔 칼망 (여, 90세)

매수인 : 앙드레 라프레 (남, 47세)

주택 시가 : 10억원

매매 조건

① 아파트 소유권은 라프레에게 넘긴다.

② 라프레는 칼망이 사망할 때까지
매달 400만원을 지급한다

③ 칼망은 죽을 때까지 아파트에
거주할 수 있다.

곳간형 자산

우물형 자산

#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?

## 【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조사결과】

(단위:만원/월)

| 구분 |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| |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부부 | 개인 | 부부 | 개인 |
| 전체 | 198.7 | 124.3 | 277.0 | 177.3 |
| 서울 | 232.0 | 144.0 | 330.0 | 205.3 |
| 광역시 | 203.7 | 122.2 | 279.9 | 173.9 |
| 도 | 185.8 | 119.0 | 258.7 | 170.1 |

**자료 : 국민연금연구원(2021년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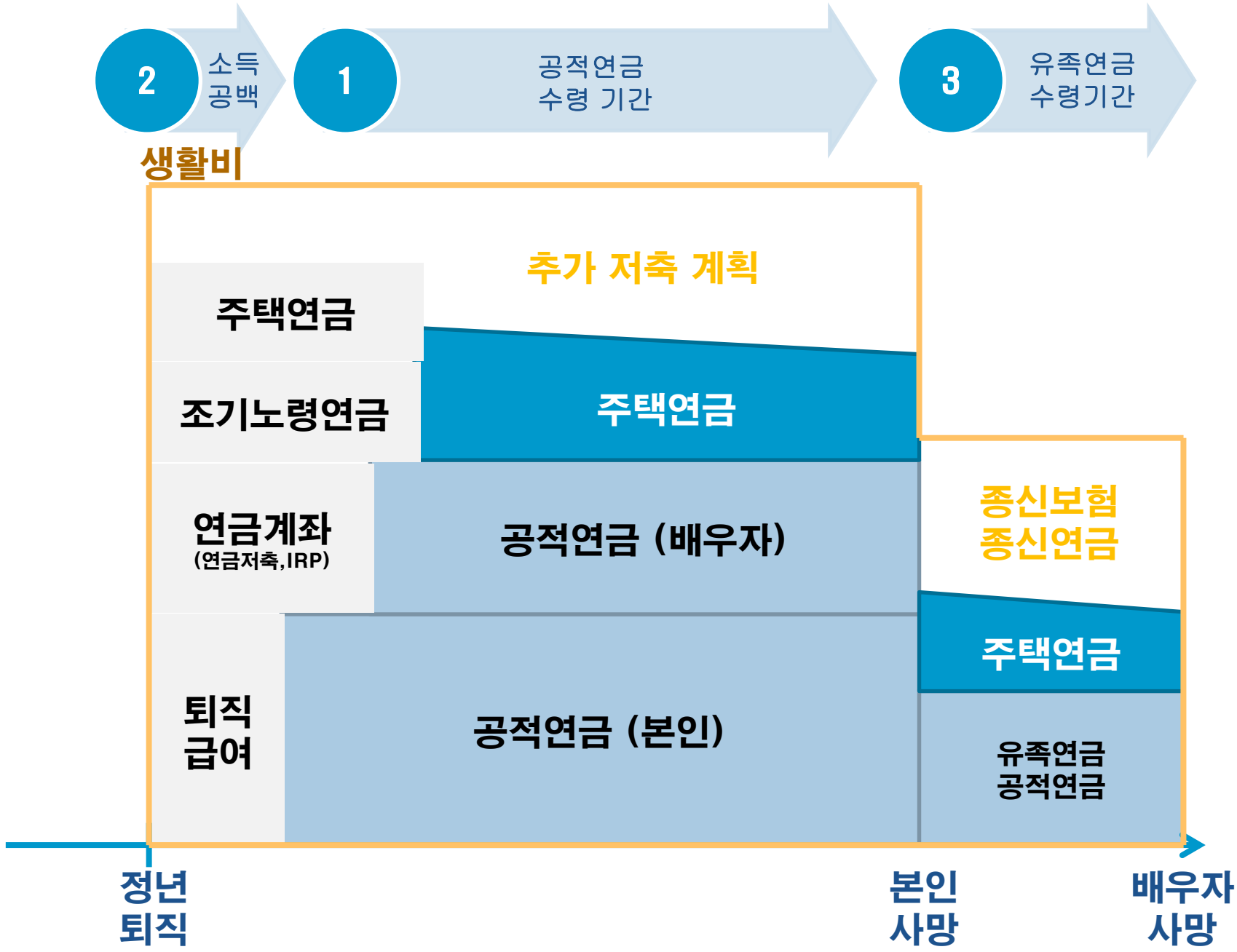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통합연금포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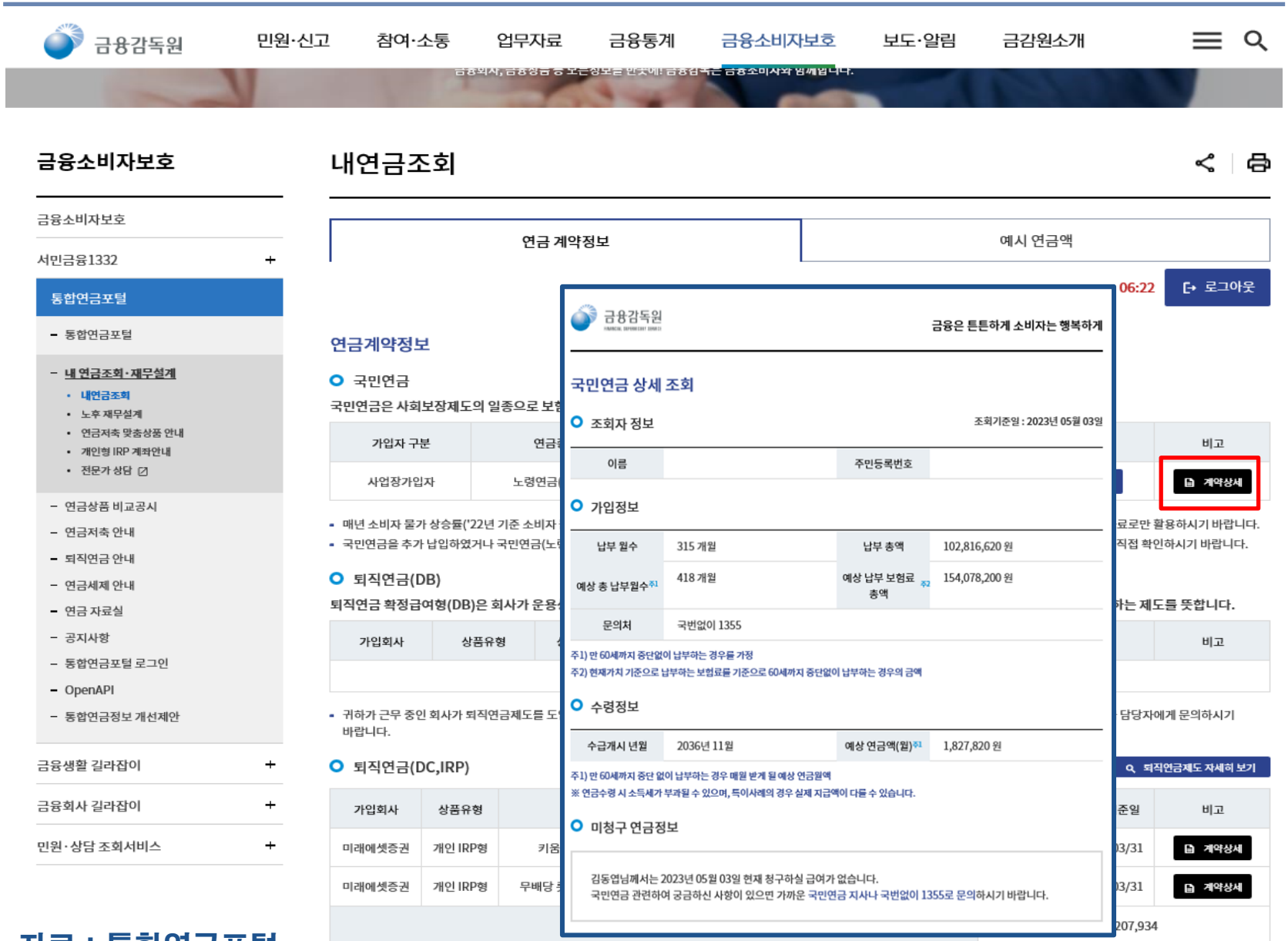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합연금포털

# 퇴직급여 완전정복

#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세스

| | |
|---|---|
| + | 퇴직급여 |
| - | 근속연수공제 |
| × | 환산배수(12배) |
| ÷ | 근속연수 |
| = | 환산급여 |
| - | 환산급여공제 |
| = | 과세표준 |
| × | 소득세율 |
| = | 환산산출세액 |
| × | 근속연수 |
| ÷ | 환산배수(12배) |
| = | 퇴직소득세 |

## 근속연수공제

| 근속연수 | 현행 |
|---|---|
| 5년 이하 | 100만원 × 근속연수 |
| 6~10년 | 500만원 + 200만원 ×(근속연수-5년) |
| 11~20년 | 1,500만원 + 250만원 ×(근속연수-10년) |
| 20년 초과 | 4,000만원 + 300만원 ×(근속연수-20년) |

## 환산급여공제

| 소득금액 | 공제율 |
|---|---|
| 800만원 이하 | 100% |
| 7,000만원 이하 | 800만원 + (800만원 초과분의 60%) |
| 1억원 이하 | 4,520만원 + (7,000만원 초과분의 55%) |
| 3억원 이하 | 6,170만원 + (1억원 초과분의 45%) |
| 3억원 초과 | 15,170만원 + (3억원 초과분의 35%) |

자료 : 국세청

# 예상 퇴직소득세

| 구분 | | 근속년수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5년 | 10년 | 15년 | 20년 | 25년 | 30년 | 35년 |
| 퇴직급여 | 5천만원 | 236만원 | 75만원 | 33만원 | - | - | - | - |
| | 1억원 | 1,036만원 | 426만원 | 239만원 | 123만원 | 75만원 | 26만원 | - |
| | 2억원 | 3,571만원 | 1,966만원 | 1,162만원 | 773만원 | 558만원 | 380만원 | 242만원 |
| | 3억원 | 6,392만원 | 4,289만원 | 2,844만원 | 1,984만원 | 1,361만원 | 1,085만원 | 870만원 |
| | 4억원 | 9,316만원 | 7,006만원 | 4,961만원 | 3,721만원 | 2,771만원 | 2,105만원 | 1,651만원 |
| | 5억원 | 12,319만원 | 9,781만원 | 7,656만원 | 5,838만원 | 4,545만원 | 3,557만원 | 2,892만원 |
| | 10억 | 28,029만원 | 24,487만원 | 21,678만원 | 19,276만원 | 17,039만원 | 14,904만원 | 12,770만원 |

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2023년에 퇴직하는 퇴직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, 퇴직급여 크기와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산출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교육용 자료로 세무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장점

## ① 퇴직소득세 30~40% 경감

-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연금 수령 가능
- 퇴직소득세율의 70%(11년 차부터 60%)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 과세

## ②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

- 퇴직수당을 전부 인출한 다음에 운용수익을 인출
-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(3.3~5.5%) 분리과세
  ▶ 55~69세 – 5.5%, 70~79세 – 4.4%, 80세 이상 -3.3%

## ③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

-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

# 퇴직소득 합산 특례

## ◆ 과거 중간정산 근로자가 명예퇴직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부담 증가

【 근속연수의 계산 】

| 2013.1.1 전 | 2013.1.1 법 개정 후 |
|---|---|
| 중간정산 여부 불문 입사일~최종 퇴직일 | 중간정산 이력 있으면 중간정산일 다음날~퇴직일 |

## ◆ 중간정산 합산특례 범위 확대 (2016년)

| 2016.2.16 이전 | 2016.2.17 이후 |
|---|---|
| 근로자퇴급여보장법에 따른<br>중간정산, DC중도인출 등 | 좌동<br>+ 임원승진, 합병·분할 등 조직변경, 사업양도,<br>계열사 전출 등 사유로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추가 |

## ◆ 퇴직소득 정산특례 적용 방법

① [퇴직급여] 중간정산 퇴직금 + 최종 퇴직금 (명예퇴직금이 있는 경우 포함)

② [근속연수] 중간정산 시 적용한 근속연수 +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

③ [퇴직소득세] 위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적용해 계산한 퇴직소득세 –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

# 퇴직소득세 합산 특례

- 금번 퇴직금 관련 자료 (DB형 퇴직연금 가입)
  - 입사한 날: 1991년 1월 1일,
  - 퇴직한 날: 2023년 12월 31일
  - 법정퇴직금: 4,000만원
  - 명예퇴직금: 3억원

- 과거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
  - 중간정산일: 2013년 12월 31일
  - 중간정산 퇴직급여: 1억 6,000만원
  - 납부한 퇴직소득세: 492만원(지방소득세 49만원)

# 합산 특례 적용 전후 퇴직소득세 비교

| 구분 | | 퇴직소득 정산 특례 미적용 |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적용 |
|---|---|---|---|
| | 퇴직급여 | 34,000만원 | 50,000만원 |
| - | 근속연수공제 | 1,500만원 | 7.900만원 |
| = | | 32,500만원 | 42,100만원 |
| × | 환산배수 | 12배 | 12배 |
| ÷ | 근속연수 | 10년 | 33년 |
| = | 환산급여 | 39,000만원 | 15,309만원 |
| - | 환산급여공제 | 18,320만원 | 8,559만원 |
| = | 과세표준 | 20,680만원 | 6,750만원 |
| × | 소득세율 | (6~45%) | (6~45%) |
| = | 환산산출세액 | 5,864만원 | 1,044만원 |
| × | 근속연수 | 10년 | 33년 |
| ÷ | 환산배수 | 12배 | 12배 |
| = | 산출세액 | 4,887만원 | 2,871만원 |
| - | 기납부세액 | - | 492만원 |
| = | 퇴직소득세 | 4,887만원 | 2,379만원 |
| + | 지방소득세 | 489만원 | 238만원 |
| = | 총납부세액 | 5,376만원 | 2,617만원 |
| 정산특례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 | | 2,759만원 | |

# 퇴직급여 수령은 어떻게 하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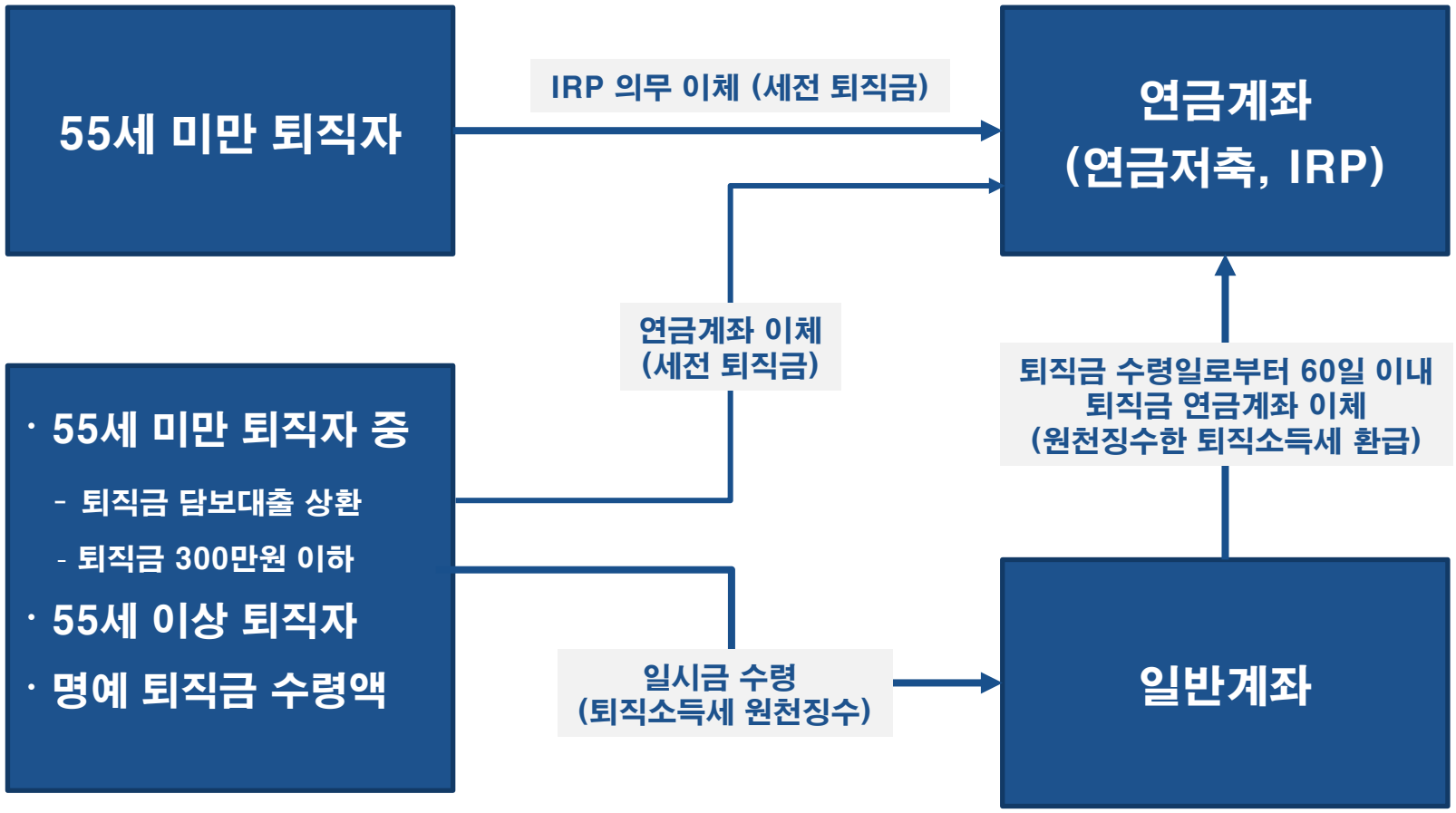

# 퇴직급여,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부담은?

**<사례>**

**홍길동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. (예상 퇴직소득세 : 2000만원)**

**<매년 2000 만원씩 연금 수령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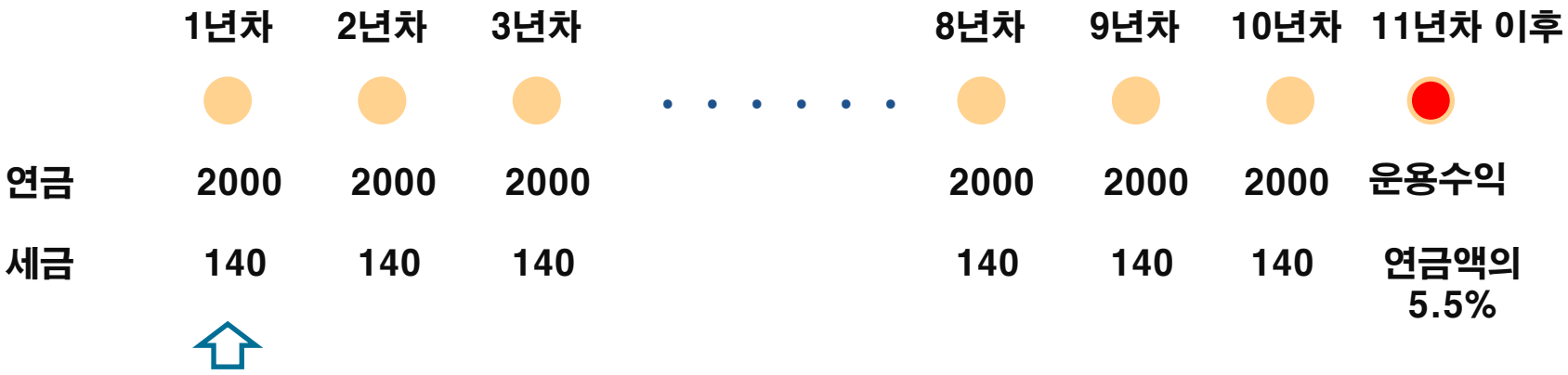


**퇴직소득세율 = 2000만원/2억원 = 10%**

**연금소득세율 = 퇴직소득세율 ×70% = 7%**

# 한 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?

**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– 연금소득, 한도초과금액 – 연금 외 수령**

- 최초 연금 수령 가능한 해를 1년 차로 하며,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차는 경과
-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
- 11년 차부터 한도 없이 연금소득 처리

$$\text{연금수령한도} = \frac{\text{과세기간 개시일(연금개시신청일) 현재 평가액}}{(11-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120\%$$

단, 2013.3.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또는 2013.3.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(DB포함)에서 새로 개설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된 경우에는 수령 연차를 6에서 시작

# 개인연금 완전정복

#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

◆ 연간 납입 한도 : 1,800만원

◆ 연간 세액공제 한도 : 900만원 (연금저축만 가입시 600만원)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연금계좌를 이용해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

세액공제율 : 지방소득세 포함

| 총 급여액<br>(종합소득금액) | 세액공제 대상<br>납입 한도<br>(연금저축 납입 한도) | 세액 공제율 | 최대<br>환급세액 |
|---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<br>(4,500만원 이하) | 900만원<br>(600만원) | 16.5% | 148만 5천원<br>(99만원) |
| 5,500만원 초과<br>(4,500만원 초과) | | 13.2% | 118만 8천원<br>(79만 2천원) |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의 과세프로세스

- 연간 저축한도 : 1800만원 + ISA 만기자금 +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(1억원)
- 연간 세액공제 한도 : 900만원 + ISA 만기자금의 10%(300만원 한도)
- 운용수익 과세 이연 : 이자 · 배당 소득세(15.4%) → 연금소득세(3.3~5.5%)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: 자유롭게 인출 가능

| | |
|---|---|
| ① 에서 얻은 운용수익 | ②에서 얻은 운용수익 |
| ①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| 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<br>(납입금액-세액공제금액) |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연금소득세 얼마나 내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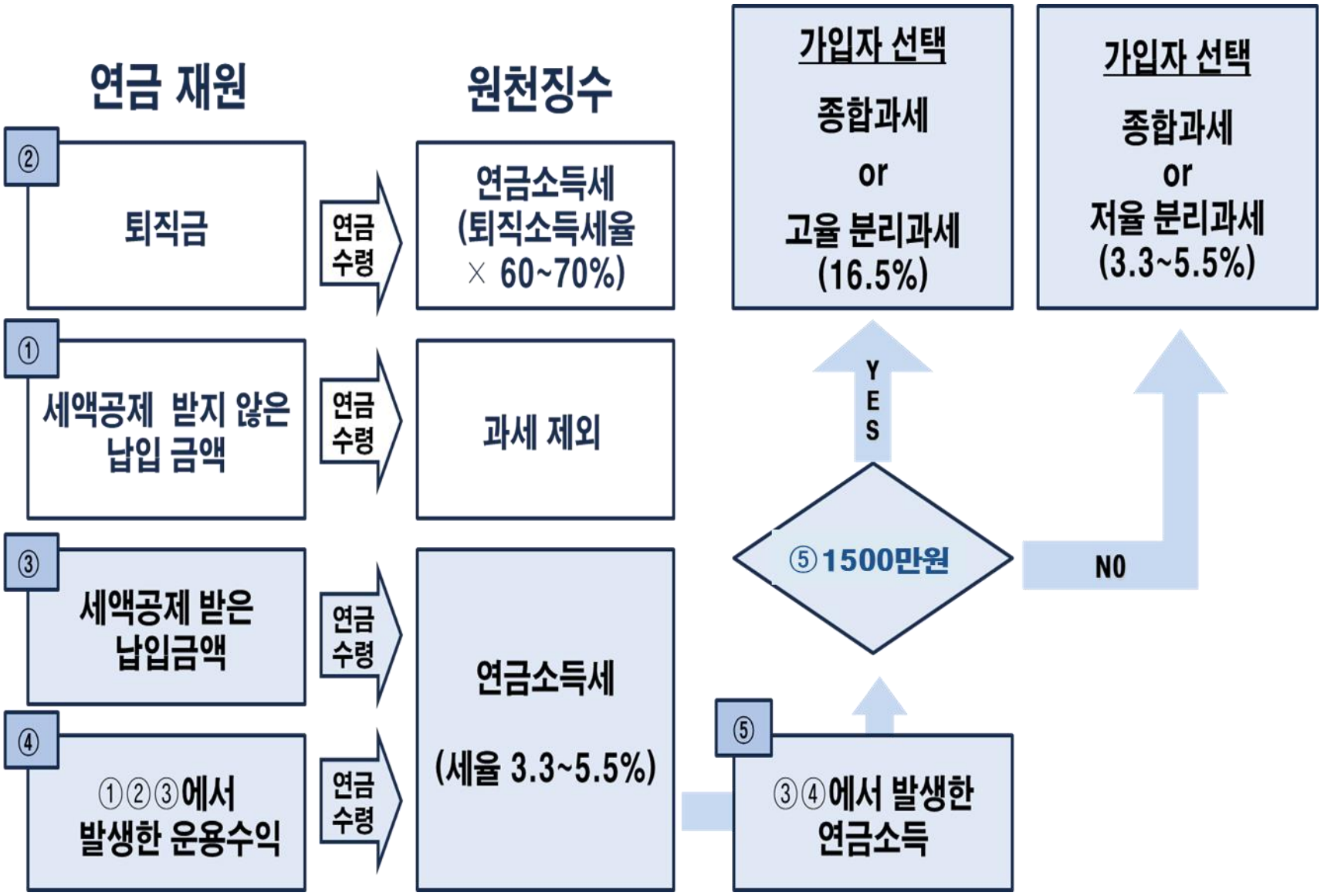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연금소득세율

| 연금(연금수령일 현재) | 연금소득세율 | 종신연금 수령시 |
|---|---|---|
| 55세 이상 70세 미만 | 5.5% | 4.4% |
| 70세 이상 80세 미만 | 4.4% | |
| 80세 이상 | 3.3% | 3.3% |

자료 : 국세청

# 연금저축으로 할까, IRP로 할까?

| 기준 | 연금저축펀드 | IRP |
|---|---|---|
| 계좌 관리 수 수 료 | 없음 | 있음<br>(일부 증권사 비대면 계좌 면제) |
| 부분 인출 | 가능 | 법정 사유 이외 불가<br>(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마련,6개월 이상 요양, 개인회생, 파산, 천재지변, 사회적 재난 등) |
| 위험자산 투자한도 | 없음 | 적립금 중 70%까지 투자 |
| 투자상품 다 양 성 | 펀드, ETF, 리츠 (검토 중) | 원리금보장상품, 펀드, ETF, 리츠 등 |
| 압류 여부 | 가능 | 퇴직급여는 압류 불가 |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

| 구분 | | 특징 | 투자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증권 | 보험 | 은행 |
| 원리금보장상품 | | 예적금, 이율보증보험(GIC), ELB 등 | O | O | O |
| 펀드 | | 주식,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 | O | O | O |
| 실적배당보험 | | 일반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보험 | O | O | X |
| 거래소 상장 | ETF |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펀드 | O | X | △ |
| | ETN |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파생결합증권 | O | X | X |
| | 리츠 |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간접투자 상품 | O | X | X |
| | 인프라펀드 | 국내외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| O | X | X |

자료 :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

#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나?

# 퇴직하면 건강보험은?

## ▶ 재취업

-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
  - 보수월액 보험료 :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
  - 소득월액 보험료 : 보수월액 제외 소득이 연간 2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

## ▶ 개인사업

- 종업원이 없는 경우 : 지역가입자
- 종업원이 있는 경우 : 직장가입자

## ▶ 피부양자

## ▶ 임의계속가입자

## ▶ 지역가입자

#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

▶ 개요

•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요소별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

▶ 부과 대상

• 소득 (정률제)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 합계액

• 재산 점수 (60등급) : 주택, 건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, 전월세(30%)

▶ 보험료 부과체계

• 소득월액 28만원(연소득 336만원) 이하 세대

○ 건강보험료 = 소득월액 최저보험료(19,780원)
+ 재산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(208.4원)

• 소득월액 28만원(연소득 336만원) 초과 세대

○ 건강보험료 =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(7.09%)
+ 재산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(208.4원)

#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

| 소득 종류 | | 부과 여부 | 적용 비율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소득 | | ○ | 100% |
| 기타소득 | | ○ | 100% |
| 이자/배당 소득 | | ○<br>연간 1,000만원 초과 | 100% |
| 근로소득 | | ○ | 50% |
| 연금 소득 | 공적연금 | ○ | 50% |
| | 사적연금 | × | - |
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

# 지역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나?

## ▣ 소득 보험료

장기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의 12.95%

| 연소득 | 336만원 이하 | 1,000만원 | 3,000만원 | 5,000만원 | 10,000만원 | 20,000만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험료율 | - | 7.09% | 7.09% | 7.09% | 7.09% | 7.09% |
| **소득보험료** | **19,780** | **59,080** | **177,250** | **295,410** | **590,830** | **1,181,660** |
| **장기요양보험료** | **2,560** | **7,650** | **22,950** | **38,250** | **76,510** | **153,030** |
| **예상지역건보료** | **22,340** | **66,730** | **200,200** | **333,660** | **667,340** | **1,334,690** |

## ▣ 재산 보험료

| 재산세 과표 | 2억원 | 5억원 | 10억원 | 15억원 | 20억원 | 30억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재산 점수 | 439 | 757 | 1001 | 1191 | 1341 | 1571 |
| 점수당 보험료 | 208.4 | 208.4 | 208.4 | 208.4 | 208.4 | 208.4 |
| **재산보험료** | **91,480** | **157,750** | **208,600** | **248,200** | **279,460** | **327,390** |
| **장기요양보험료** | **11,840** | **20,420** | **27,010** | **32,140** | **36,190** | **42,390** |
| **예상지역보험료** | **103,320** | **178,170** | **235,610** | **280,340** | **315,650** | **369,780** |

- **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작성한 예상보험료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**

# 피부양 자격을 취득하려면?

| | 인정 기준 |
|---|---|
| 소득 | ○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<br>○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<br>○ 모든 소득(사업,금융,연금,근로,기타소득) 합산 연간 2,000만원 이하<br>☞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<br>☞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<br>☞ 장애인, 국가유공,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|
| 재산 | ○ 재산세 과세표준 5.4억원 이하<br>○ 재산세 과세표준이 5.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,000만원 이하<br>○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.8억원 이하<br>☞ 재산의 종류 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|
| 부양요건 | ○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<br>○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<br>○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비속 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과 그 배우자<br>○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,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<br>☞ 동거/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|

# 임의계속가입 제도

◆ 적용 대상

-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
-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(보수월액보험료+소득월액보험료)를 공단에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

◆ 신청기한

-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

◆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

-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×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% + 소득월액 보험료
-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
-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

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.
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
내일을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
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.